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14 선고 2020가단1039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가온
변 론 종 결 2020. 12. 3.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1. 피고와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10.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0. 21. 접수 제583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2016. 10. 14. B으로부터 중소기업은행 자금대출에 관한 보증의뢰를 받고 보증서를 발행하였다.
- 2) B은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게 원고 발행의 보증서를 제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9,000만 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받았으나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9. 11. 11.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11. 19.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였다.
- 3) 원고는 2019. 12. 30. 중소기업은행에게 B의 대출원리금 90,423,23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 1) B은 2019. 10. 21. 전처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아래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B의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0. 21. 접수 제583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B은 매매대금을 9,000만 원으로 하되 은행융자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양육비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B의 재산관계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9,000만 원(원금),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5,8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라. B과 피고의 혼인관계와 그 경과

- 1) B은 2007. 5. 25.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다.
 - 2) B과 피고는 2012. 6. 22. 이 사건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대출을 받아 C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42,8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 3) B과 피고는 2015. 7. 15. 부산가정법원 2015호협2607호로 협의이혼신청을 하였고, 2015. 10. 15. 이혼의사 확인기일에서 협의이혼에 합의하면서 양육비에 관하여 피고가 B에게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5. 12. 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 4) B은 피고와 이혼할 무렵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등 자녀의 학원비를 부담하였고, 2015. 10. 23. 피고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 피고는 B과 이혼한 후 2016. 1. 28.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2016. 1. 30. D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 거주하다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6. 7. 18. D로부터 보증금 잔액 465만 원을 돌려받아, 2016. 7. 29. B에게 그 중 200만 원을 돌려주었다.
- 5) 피고는 2012. 7. 10. B,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4. 4. 21. 자녀들과 함께 다른 주소로 전입하였고, 2015. 3. 13. 다시 B의 세대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20. 5. 7. 당시 세대주인 B이 거주불명을 이유로 세대주를 피고 본인으로 변경하였다.
 - 6) 피고와 B의 협의이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87,000,000원이고, 잔존 채무액은 110,609,809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6호증 내지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사하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위의 인정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보증서가 발급되고 그에 따른 대출이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대출원리금의 지급이 연체되는 등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B의 폐업으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처분하였고 그로 인하여 B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명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재산분할로서의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는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B과 협의이혼하기 전인 2015. 3. 14.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명의로는 B 앞으로 하고 (B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포기하고 친권까지 포기한다. 현금 5,000만 원을 받을 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B이 혼인기간 중 각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재산인 점, ② B은 피고와의 혼인 기간 중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꾸준하게 경제활동을 하여 왔고 2015년과 2016년경 자녀들의 학원비 등 생활비를 부담하였던 점, ③ 피고와 B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B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할 정도의 유책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 반면 협의이혼을 할 무렵 B이 피고에게 현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의 목적으로 삼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와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 명의의 지분비율대로 소유하는 것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라고 보인다.

B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양육비 지급에 갈음하는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재산분할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의사와 악의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B의 사해의사와 B의 전처인 수익자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무자력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1) 취소의 범위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C은행에게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45,292,90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참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목적물의 원물반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면서 그 취소와 가액배상의 범위를 사해행위 목적물 중 공동담보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을 한도로 삼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불가분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통한 원물반환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달리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전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취소와 원상회복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의선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84.9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 757.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757.2분의 15.97